

문서번호	주민생활지원 과-4261
결재일자	2016.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보도여부	

주무관	희망복지지원1팀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국장
서복수	이만희	심원택	02/11 강대형
협 조			

**2016년도 수유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6.2.11.

강 북 구

2016년도(수시)

## 수유종합복지관 지도점검 결과보고

수유종합복지관(직영) 운영에 따른 다산콜, 서울시 내부민원 구두접수, 2015년 전국단위 사회복지관 최하위 평가결과 등 최근 수유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2016.1.22 ~ 1.27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 I 점검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내지 제15조

### II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16. 1. 22 ~ 1.27
- 점검대상 기관 : 수유종합사회복지관(관장 공도윤)
- 점검인원 : 희망복지지원1팀장 외2명
- 점검방법 : 제출서류 확인 및 현장확인 등
- 점검범위 : 2014. 1월 ~ 2016. 1월까지 처리한 업무전반
- 중점 점검내용
  - 최근 수유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
  - 복지관 운영위원회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 복지관의 인력관리, 기능보강 및 후원금 관리, 자체 운영규정 준수 등 제반사항

-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등 후원금 전반적인 관리
  -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및 예산회계, 물품관리 전반 등
- 지적사항 현황
- 지적건수 : 6건(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구분	계	일반·행정	예산·회계	후원금	기타
수유 종합사회복지관	6	3	2	1	

### Ⅲ 점검결과

#### ■ 총평

- 이번 수유종합복지관 지도·점검(수시)은 최근 다산콜 등을 통한 민원발생 및 2015년 전국단위 사회복지관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최근 수유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복지관 운영을 정상화 시키는 방향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함
- 지도점검 결과 수유종합복지관의 문제점은 법인(운가자비원) 자체의 내부 갈등 등에서 문제가 많았으며, 이는 2015.10월경부터 물리적 충돌로 나타나면서 이로인해 수유종합복지관이 파행 운영되고 있었음
- 법인의 내부문제는 복지관장(공도운)의 사직서 제출로 일부 해결된 듯 보이나 법인 이사들간의 갈등이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어서 법인이사회의 정상적운영 및 이에 따른 복지관 운영의 정상화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업무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 2015.12.15.~2016.1.31.까지 복지관이 파행으로 운영되면서 복지서비스가 최저수준이었으며, 이에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불편

을 주었음

- 지정후원금 부적정 사용, 복지관 시설공사비 미지급, 종사자채용 공개모집 미이행 등 지적사항이 있었음
- 이상과 같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복지관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나, 파행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설장(관장)이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법인의 상임이사 등이 정상운영에 대해 결의를 보이고 있어, 금회에는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하고자 함
- 위 시정명령 조치의 이행여부 및 복지관의 정상적 운영 여부를 수시점검하여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 [ 주요 지적사항 ]

### ○ 복지관 서비스 최저기준 이상 미준수

- 2015.12.15..~2016.1.22.까지 복지관 운영관련 서류일체를 박스에 담아 끈으로 묶어 복지관 관장실에 방치한 상태로 소홀히 관리하고 있음
- 복지관 직인, 관인 및 운영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인터넷 뱅킹관련 OTP 카드 등 관리 미흡
- 2015.12월말까지 운영해 오던 5개프로그램을 운영 하지 않아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음

### ○ 지정후원금 부적정 사용

- 2015. 1. 1.~2016. 1. 30.기간 동안 ‘아름다운 가게 외 3개단체에서 저소득자 의료비지원 및 주거비 지원명목 등으로 지정기부한 후원금을 17차례 걸쳐 31,160,000원을 지출결의서 없이 사업비 통장으로 무단인출하였고, 21차례에 걸쳐 28,760,000원을 입금하여 현재 2,400,000원의 지정후원금을 무단인출하여 부적정하게 사용함

○ 복지관 시설공사비 미지급

- 수유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5.7.15일 '1층데이케어세면장설치공사건에 대하여 공사비를 확보하지 않은 채 13일에 걸쳐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대금지급은 공사 완료 후 지급한다 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으나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복지관 예산사정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한다는 생각으로 2016.1.27일까지 공사비 2,97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하게 계약을 시행함

## IV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목록

시설명	관 리 호	제 목	조치사항	비 고
수유종합사 회복지관	1	복지관 서비스 최저기준 이상 미준수	시 정	
	2	복지관 종사자채용 공개모집 미이행	시 정	
	3	종사자 채용에 따른 성범죄조회 미이행	시 정	
	4	퇴직적립금 미반납(1년 미만 종사자)	시 정	
	5	복지관 시설공사비 미지급	시 정	
	6	지정후원금 부적정 사용	시 정	

## ■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

연번	지 적 사 항	조치 요구사항	처분
1	<p>□ 복지관 서비스 최저기준 이상 미준수</p> <p>사회복지법제43조 제2항에는 시설운영자는 서비스 최저 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27조에는 사회복지관 서비스 최저기준 항목으로 시설이용자의 인권, 시설의 환경, 시설의 운영, 시설의 안전관리, 시설의 인력관리,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 유지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12.15..~2016.1.22.까지 복지관 운영관련 서류일체를 박스에 담아 끈으로 묶어 복지관 관장실에 방치한 상태로 소홀히 관리하고 있음</li> <li>○ 복지관 직인, 관인 및 운영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인터넷뱅킹관련 OTP 카드 등 관리 미흡</li> <li>○ 2015.12월말까지 운영해 오던 5개프로그램을 운영 하지 않아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있음</li> </ul>	<p>○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p>	시정
2	<p>□ 복지관 종사자채용 공개모집 미이행</p> <p>보건복지부 「2015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에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7.1~2015.10.1 임채명 외3명(사회복지사)을 채용하면서 모집공고를 하지 않고 채용함.</li> </ul>	<p>○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사자교육을 통한 재발방지</li> </ul>	시정
3	<p>□ 종사자 채용에 따른 성범죄 사실 미조회</p> <p>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2항 2호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11.1~12.1. 채용된 직원2명에 대하여 위 위반여부를 확인하지 않음</li> </ul>	<p>○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제출 및 종사자교육</li> </ul>	시정

연번	지 적 사 항	조치 요구사항	처분
4	<p>□ 퇴직적립금 미반납(1년 미만 종사자)</p> <p>「2015년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지원기준」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적립금은 전액 반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p> <p>○ 2015.10.1 입사해서 2015.11.30 퇴사한 최지원에 대해 퇴직적립금 200,000원을 반납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p>○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종사자에게 퇴직적립금 반납후 증빙자료 첨부하여 결과제출 및 종사자 교육</li> </ul>	시정
5	<p>□ 복지관 시설공사비 미지급</p> <p>「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음</p> <p>○ 수유종합복지관에서는 2015.7.15일 ‘1층데이케어 세면장설치공사건에 대하여 공사비를 확보하지 않은 채 13일에 걸쳐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대금지급은 공사 완료 후 지급한다 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으나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복지관 예산 사정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한다는 생각으로 2016.1.27일까지 공사비 2,97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등 불공정하게 계약을 시행함.</p>	<p>○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공사비 공사업체에 지급하고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할것</li> <li>-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업무에 관하여 직원교육 실시</li> </ul>	시정
6	<p>□ 지정후원금 부적정 사용</p> <p>「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에 근거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7(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에 근거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p> <p>○ 2015.1.1.~2016.1.30.기간동안 아름다운가게 외 3개 단체에서 저소득자 의료비지원 및 주거비 지원명목 등으로 지정기부한 후원금을 17차례 걸쳐 31,160,000원을 지출결의서 없이 사업비 통장으로 무단인출 하였고, 21차례에 걸쳐 28,760,000원을 입금하여 현재 2,400,000원의 지정후원금을 무단인출하여 부적정하게 사용함.</p>	<p>○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 전입금 등으로 지정후원금 통장에 입금하여 절차에 맞게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 후 증빙자료 첨부하여 결과 제출 및 직원교육 실시</li> </ul>	시정

## V 행정 사항

-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복지관 자체 직원교육 실시
-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 제출
  -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2016. 2. 22.(월)까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제출서식

연 번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 고